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4573 영업비밀침해금지등  
2014가합1011(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

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1.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H은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 2014. 4.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2014.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2014.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D는 피고 A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4. 6. 4.까지는 연 5%, 2014.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

어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초경합금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별지1 내지 별지7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정보가 기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문서 또는 파일을 폐기하라.
2. 피고 B는 별지8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B는 위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영업소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8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각 폐기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99,434,393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054,127,728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6,106,946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607,544,437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1,421,655,283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각 2015. 11.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E, F, G, H은 I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054,127,728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6,106,946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607,544,437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1,421,655,283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각 2015. 12.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6년경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초경합금의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에 Co(코발트) 및 첨가제를 혼합해 만든 다양한 재종의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초경합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 A는 1989. 8. 1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5. 18. 원고의 대표 B 취임하였다가 2011. 5. 27.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 B(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1. 7. 19.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4) 피고 A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던 중 2010. 2. 28. B 주식회사 에스지테크톨(이하 '에스지테크톨'이라고 한다)이라는 초경합금 제품의 유통 및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5)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일본에서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원고의 해외 거래처였으나,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 및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 피고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6) 피고 A는 1989. 4.경부터 2011. 9. 20.까지 소결과정 및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원고의 생산관리직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별지3 기재 파일(이하 '별지3 소결자료'라 한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현재 피고 회사의 감사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7) 피고 C는 2001. 7. 29.부터 2011. 8. 5.까지 금형설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별지4 기재 파일(이하 '별지4 금형설계자료'라 한다)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위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퇴사 후 금형설계업체인 우주테크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 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8) 피고 H는 2011. 7. 19. 피고 회사의 대표 B 취임한 사람이다.  
나. 초경합금의 제조방법

1) 초경합금은 WC(텅스텐카바이드) 등 금속탄화물에 Co(코발트) 등 결합제, 첨가제를 첨가한 뒤 소결하여 결합시킨 합금을 총칭하는 것이다. 초경합금 제품의 생산공정은 통상적으로, ①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 Binder(결합제)인 Co(코발트) 분말 및 첨가제(탄화제인 Cr3C2, VC 등) 준비, ② 재료 배합, ③ 건조(Dry), ④ 채취, ⑤ 프레스(Automatic Press), ⑥ 예비소결(혼합한 재료를 고온의 로(爐)에 넣어 합금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H2 Furnace Vacuum), ⑦ 성형(Mechanic Working Forming), ⑧ 본소결, ⑨ 초경합금 소재 완성 및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중국 원료업체로부터 해당 규격의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구매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원료관리표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료 투입 및 교반작업을 한 후 소결과정을 거친다. 원고는 각종 재종의 소결과정에서 얻은 소결패턴, 카본분석자료 등을 별지3 기재 파일들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소결과정에 참조하고, 성형 과정에 필요한 별지4 기재와 같은 파일 형식으로 만든 거래처별 금형설계도 및 설계수치, 재종명, 규격, 형상, 영업정보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에서 주문한 바와 같은 초경합금을 제작한다(이하 별지1 내지 4 기재 각 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자료들'이라고 한다).

3) 초경합금 제품은 P계, M계, K계 등의 소재로 나뉘는데, 원고는 그 중 K계 초경합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일반적으로 초경합금에 관한 학계의 논문 및 동종 업계에서는 초경합금의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 조성 수치 및 첨가제의 종류별 특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ICP 분광분석기 등을 사용하면 초경합금 제품의 미량 첨가원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물성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첨가제의 종류 및 함량이지만, 첨가제와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입자의

균일한 분포 및 혼합이 이루어지는 밀링공정과 열처리과정인 소결공정 등 초경합금 제조과정의 다양한 공정변수에 의해 제품의 특성이 좌우되므로, ICP 분석만으로는 동일한 초경합금 제품을 역설계하여 생산하거나 제품의 정확한 생산 공정을 알 수는 없다.

#### 다.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 1) 피고 C의 설립 준비 과정

피고 C은 원고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1. 5. 말경 원고의 영업부 간부 직원들을 외부에서 만나 새로 설립할 피고 회사에 관하여 회의를 하거나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였고, 퇴사 직후에는 원고의 생산부 직원인 피고 B(생산부 직장), 김서권(생산부 직장), 서광민(가공실 차장), 피고 C(공정관리 과장)에게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제품 생산에 참고할 원고의 생산기술자료, 원고 생산직 직원들의 기술 숙련도 파악 및 인원수 배, 생산설비 계획 및 예산,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재종개발 스케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C은 2011. 6.경 무렵부터 피고 D의 에스지테크놀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설립에 참가하기로 한 피고 D, B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고, 피고 B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를 물색하거나 생산 설비를 준비하였으며, 원고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M에게 원고의 원료공급업체인 중국의 해성으로부터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외상으로 입고하기 위한 재종별 분말입고리스트와 피고 회사의 사업개요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의 국내 거래처(대리점)였던 건우초경 주식회사, 두리테크(신조용)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한편, 피고 D, B과 함께 원고의 해외거래처인 피고 I이와도 접촉하여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설립 이후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2) 피고 ㉠의 설립 준비 과정

피고 ㉠은 2011. 5. 27.경 피고 ㉡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경부터 피고 회사의 설립에 참가하였다. 피고 ㉠은 2011. 6. 11.경 원고의 생산부 직장인 서광민으로부터 '성형실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사에 필요한 성형실 생산설비 계획 및 예산, 원고 성형실 직원의 기술 숙련도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고 회사에 필요한 인력과 생산설비 등을 피고 ㉡에게 보고하는 한편, 원고의 가공실 차장인 김서권 등과 함께 원고의 각 공정별 생산직 직원들에게 원고보다 더 나은 대우조건(연봉 인상 및 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 ㉠은 원고에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여 피고 ㉡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고, 2011. 7.경에는 피고 ㉡과 함께 원고가 사용 중인 소결로 제작업체인 한빛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피고 회사에 설치할 소결로를 구입하였으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 4,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 3) 피고 ㉢의 설립 준비 과정

피고 ㉢은 피고 ㉡이 원고를 퇴사하기 전인 2011. 5. 4.경 피고 ㉡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립할 피고 회사의 초경합금 제조 공장을 위한 기본공장도면을 준비하였고, 피고 ㉡이 원고를 퇴사한 2011. 6.경부터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에스지테크놀 사무실을 피고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피고 ㉡, ㉠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피고 ㉢은 2011. 6.경부터 피고 ㉡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와 접촉하여 자금을 투자받는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 4) 피고 ㉠의 설립 참여 과정

피고 ㉠은 초경합금 제조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피고 ㉡과는 절친한 사이인데, 피고 ㉢의 에스지테크놀 사무실에서 피고 ㉡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고 ㉡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피고 ㉡, ㉢과 함께 피고 ㉠이와 접촉하여 자금을 투자받는데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 ㉠은 2012. 1. 4.경 피고 ㉡이 피고 회사의 설립 및 피고 회사에 투자한 원고의 거래처(대리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실제 사주인 ㉣ 회장을 찾아가 피고 회사의 실제 주주를 공개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반대하여 피고 ㉢, ㉠ 및 원고의 거래처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인 이건영(건우초경 주식회사), 신조용(두리테크)과 함께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피고 ㉡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시킨 다음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5) 피고 ㉠이와 협의 및 피고 ㉠이의 자금 투자

가) 피고 ㉡은 2011. 6.경부터 일본어에 능통한 피고 ㉢을 통해 피고 ㉠이에게 아래와 같이 서면을 보내거나 피고 ㉠이의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의 자금조달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 피고 ㉡ 등은 2011. 6. 12. 피고 ㉠이에게 "안건 : 신건초경제조회사에 관한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창업예정일, 생산목표, 필요인원, 공장 규모 및 위치, 초기자본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 등은 2011. 7. 16. 피고 J의 대표이사인 야마모토 세이지로부터 "야마모토 사장(자본금 건)"이란 제목의 문건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① 피고 J는 피고 C 등이 제시한 자본 계획에는 찬성할 수 없고, 피고 J가 자본금을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 필요조건으로 피고 J와 김사장(피고 C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출자 지분이 합계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 J가 출자하는 목적은 배당금이나 주식매각이 아닌 사업목적인 점, ③ 원고와의 관계상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K 취임하는 것은 곤란하고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C 등은 2011. 7. 15. "재질표 및 진행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2011. 7. 19. 마지막 수정을 거쳐 피고 J에게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피고 회사의 공장 설립 및 관련 설비의 설치, 담당 기술자 채용시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 C, D 및 피고 회사의 대표K 취임한 피고 H는 피고 회사 설립 다음 날인 2011. 7. 20. 일본에 있는 피고 J이 회의실에서 피고 J의 대표이사 야마모토 세이지를 비롯한 피고 J의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 계획(피고 J의 투자 방안), 인원 계획(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 원고로부터 예상되는 법률적인 공격과 대응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C은 위 회의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45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피고 J는 그 중 15억 원을 투자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J이 측은 위 자본금 제안에 반대하면서 "피고 J가 최대 주주인 경우 단독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고, 피고 J이와 피고 C의 출자 지분 합계

가 50% J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자액은 18억 원 정도로 증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1. 7. 22. 피고 J에게 '피고의 사업(자금)계획서'를 보냈는데, 위 계획서에는 피고 J의 출자금이 18억 원, 지분율 40%로 표시되어 있다.

(6) 피고 J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에 앞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피고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가 2011. 8. 8. 피고 회사에게 보낸 질의서를 살펴보면, 위 질의서 제5항 하단에는 피고 J가 2011년 8월 투자금 10억 원(주식수 100,000주), 같은 해 9월 투자금 18억 원(주식수 180,000주)을 투자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피고 J는 2011. 8. 11. 김·장 법률사무소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J의 질문 내용	김·장 법률사무소의 답변 내용
원고에서 사임한 사원의 경우 피고 회사에 즉시 입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 사원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타사에 입사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피고 회사로 입사하면 안전한 지 여부	판례는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와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여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개인이 취득한 지식·정보를 유용했을 경우, 기록 매체를 반출했을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지가 있다.
김사장(피고 H)이 타업종에 종사 또는 창업하는 경우 법적 문제 / 원고의 영업사원이 독립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며 원고와 동일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	명시적인 경쟁금지약정이 있을 경우 경쟁금지의 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 유무만 문제된다. 실제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보 기술 등이 비밀로서 관리되어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이며, 공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방어할 수 있어 이러한 분쟁은 피고 회사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이 피고 회사에 법적으로 명의가 없는 경우의 소송가능성 / 피고 [A]이가 에스지테크(SG테크)에 출자해 에스지테크가 피고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법적 문제	피고 [A]이가 실패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소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에서 이를 좋지 않게 볼 것이라는 피고 [A]이 측의 견해에 관하여 위 법률사무소가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함.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경우 자금 출처를 알게 될 가능성	피고 회사의 법인세 신고시에 주주의 지분변동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통하여 세무당국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8)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1. 8. 18. 피고 [A]이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보고서를 전달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보, 기술 등을 이용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 회사의 설명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출신의 직원을 다수 채용할 예정인 것은 물론, 장래 피고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 원고 출신의 피고 [B]는 원고의 금형자료를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 회사의 영업에 대해 원고의 정보·기술이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피고 회사와 피고 [A]이는 2011. 8. 23. 거래기본계약서 등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23. 협의 내용
2. 피고 [A]이는 현시점에서는 피고 회사로의 출자는 실시하지 않는다(원고와의 소송대책 및 현시점에서는 정관 등 피고 회사 측의 준비가 늦다). 피고 회사로의 협력으로서 매매 기본 계약서를 작성, 대금의 선불을 실시한다. 원고와의 소송 대책으로서 피고 회사 측이 연대보증, 토지

등의 담보 제공을 실시한다. 3. 향후 1년간 정도의 경과 후, 수취인 부담 대금을 자본금에 대체할 예정(DES <sup>1)</sup> ). 자본금에 옮겨 놓는 시점에서, 피고 [A]이 측의 출자는 51% 이상을 예정. DES에 관해, 각서, 회의록, 혹은 계약서를 주고받는다. 6. 피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한국 국내의 판매는, 피고 회사가 실시한다. 한국 국외에의 판매는, 피고 [A]이가 실시한다. 8. 기술·제조 노하우 제공의 계약서를 작성한다(재판 소송시 원고에 대한 확실한 대응).
---

나) 피고 [A]이는 2011. 8.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 피고 회사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 10. 15. 5억 원, 같은 해 11. 28. 5억 원, 2013. 3. 29.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4회에 걸쳐 28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C]사리포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부채 항목에는 피고 [A]이가 지급한 선급금이 2012. 12. 31. 기준 2,378,073천원, 2013. 12. 31. 및 2014. 12. 31. 기준 각 2,800,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기술자료 및 생산 인력 등의 유출

1) 피고 [C]의 지시

피고 [C]은 2011. 5. 27.경 원고의 실제 사주인 [D]과의 의견충돌 후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1. 5. 28.경 위 사실을 모르는 원고의 기술배합팀장인 김태상에게 별지2 기재 파일인 원고의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이하 '별지2 원료관리표준'이라 한다)을 출력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둘 것을 유선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김태상은 같은 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인 위 원료관리표준

1) 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인 Debt-Equity Swap(출자전환)의 약자로 보인다.

을 출력하여 피고 ㉠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 2) 이 사건 각 자료 등의 유출 확인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 2013. 4. 9.경 원고의 초경합금 제조기술 유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과 피고 ㉢의 에스지테크놀 사무실 및 피고 ㉣, ㉤, ㉥의 주거지를 일제히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 ㉢의 USB에서는 2011. 5. 30.자로 생성된 별지2 원료관리표준이 PDF 파일 형태로 발견되었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의 USB에서는 개별 소결패턴, 카본분석자료 등이 담긴 원고의 별지3 소결자료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피고 회사 사무실 및 피고 ㉧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의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3,991건에 달하는 원고의 별지4 금형설계자료가 발견되었다.

## 3) 원고의 생산인력 유출

한편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은 2011년도에 19명,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2명 등 총 32명에 이르고, 피고 회사의 생산직 기술자는 원고의 각 공정별 핵심기술자를 포함하여 모두 원고에서 이직한 생산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마.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이 원고에서 퇴직하면서 별지2 기재 원료관리표준을 절취하였다가 피고 회사에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직원인 피고 ㉡ 등을 통하여 절취한 별지2 기재 원료관리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 피고

회사는 2012. 9. 2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2년 형제3793호).

2)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 ㉤, ㉥, ㉦, ㉧이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위 피고들을 다시 형사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수색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2014. 8. 22.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2015. 6. 30. 피고 ㉣, ㉤, ㉥에 대하여는 원고의 중요 영업자산인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여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2012. 3. 5.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33호로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중국 텅스텐 원료 구매자료 및 원고의 2010. 9. 1.자 원료관리표준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2012라74호 결정으로 위 원료구매자료 및 원고의 원료관리표준은 원고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4)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자료들 및 "각 재종의 배합설계를 위해 작성된 2011. 11. 1. 이후의 일자별 KJ알로이 재종별 배합설계 표준"과 신규 DIES 제품도 및 금형설계도들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여 2014. 11. 20. 대구고등법원 2014라3호로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



료가 없는 일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별지 5 내지 7 기재 각 자료(이하 '피고 회사 작성 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바. 피고 회사 작성 자료 및 제품 생산

1) 피고 회사는 2011. 11. 1.자로 별지5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재종표 등을 만들었는데, 위 재종표 등을 보면 원고의 별지2 원료관리표준의 각 해당 항목의 수치와 동일하고, 일부 재종표는 원고의 재종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 **㉠**, **㉡**, **㉢**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원료관리표준에 있는 원고의 재종표를 참고하거나 베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별지5 순번 11 내지 25 기재와 같은 재종표 등을 만들었는데, 위 재종표 등을 보면 별지2 원료관리표준에 기재되어 있는 첨가제의 종류 및 투입비율 등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초경합금 생산공정도 원료분말의 입도, 밀링 및 교반 공정에 투자하는 시간 등이 원고의 생산공정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피고 회사는 2012. 6.경 별지6 기재와 같은 소결기술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승온 패턴 그래프는 별지3 소결자료 중 유사 재종명의 소결자료와 같은 형태를 보이나, 설정온도나 그 변화정도, 설정시간의 길이 및 타임시그널 조건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다만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 **㉣**의 업무노트에는, ① 2011. 10. 25.자 피고 회사의 회의 내용으로 "우선순위 재종 : 20여종, 미립재종 : 전주에서 배합(SF13, K10S, KF1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SF13, K10S, KF12는 원고의 재종명이고, ② 2011. 12. 20. "신생공업 인원 흡수 : 본사안정화(생산안정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작업노트 '재종표'란에 원고의 재종명과 피고 회사의 재종명을 화살표 표시

로 대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소결 과정에서 나온 수치를 원고의 재종명에 대하여 기재하기도 하였고, ④ 2011. 11. 30.자 메모에서는 "배합은 ATR을 신생보다 1시간+ 했더니 아주 양호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생산 초기에 원고로부터 유출된 별지3 소결자료를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

3) 피고 회사는 별지7 기재와 같은 금형설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순번 2 기재 금형설계도<sup>2)</sup>를 제외한 나머지 금형설계기술자료는 별지4 기재 금형설계자료의 유사품명(규격)과 기재 내용이 유사하다.

4)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작성 자료들에 기초하여 별지8 기재 각 재종의 초경합금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 사. 원고 및 피고 회사의 **㉤** 및 이익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인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단, 2009년 제외) 전년도 **㉤**에 대비하여 연간 **㉤**이 매년 증가하여 2011년경에는 연간 **㉤**이 43,429,260,939 원에 이르는 등 국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K계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나,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설립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이 매년 감소하였고, 반면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이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연간 **㉤**에 대한 원고의 연도별 이익률은 별지 연도별 손익계산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한계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별지 연도별 손익계산 기재와 같이 공제되는 변동비 항목으로 매출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상관계수가 0.1 이상인 비용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① 접대비, ② 경상연구개발비, ③ 운반비, ④ 도서인쇄비, ⑤ 사무용품비, ⑥ 변상비, ⑦ 잡비를 변동비로 인정하였

2) 순번 6 기재 DIES 역시 동일 품명·규격의 파일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지4 순번 65 기재 BUSH와 규격이 유사하고, BUSH는 금형의 Die Set를 구성하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유사 재종으로 판단한다.

다).

[표 1] 연간 R

연간 R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원고	35,944,123,520원	35,330,731,501원	30,993,012,475원	28,683,821,639원
피고 회사	5,705,030,787원	7,787,203,343원	10,203,078,872원	11,417,668,184원

[표 2] 원고의 연간 이익률(매출총이익률, 한계이익률, 영업이익률)

이익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총이익률 <sup>3)</sup>	20.23%	25.89%	25.55%	22.11%
한계이익률 <sup>4)</sup>	18.19%	24.34%	24.23%	20.81%
영업이익률 <sup>5)</sup>	8.57%	15.51%	12.45%	6.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4, 17 내지 24, 35 내지 41, 47 내지 68, 70, 73, 75 내지 77, 80 내지 82, 85, 86, 93, 97, 100, 102. 10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4, 26 내지 28, 31, 32, 47, 48, 51, 55 내지 63, 78 내지 80, 93, 99, 101호증, 을나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S, 부산지방검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김천세무서,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매출총이익이란 R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직접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출총이익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매출총이익}(R - \text{매출원가})}{R}$$

4) 한계이익이란 R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직접비)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한계이익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R - \text{매출원가} - \text{변동비})}{R}$$

5) 영업이익이란 R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직접비)와 간접비(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이익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R - \text{매출원가} - \text{간접비})}{R}$$

피고 H이 대표K 있는 피고 회사는 피고 D, I이와 공모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었던 피고 C, E, G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만들었으며, 위 작성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제조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 및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자료들이 기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문서 또는 파일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품들을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제품들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그 제조설비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만들어 원고의 거래처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거래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에게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C, E, G는 이 사건 자료들을 원고로부터 유출하였으며, 피고 D, I이, H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공모(피고 I이의 경우 예비적으로는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설령 이 사건 자료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C, E, G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 내지 결과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회사, 피고 D, I이, H은 위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가) 별지1 기재 원료공급업체 정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중국원료담당경리인 김영빈을 중국에 상주시켜 중국 각지의 광산과 텅스텐분말 생산공장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원고가 기준

으로 정한 품질요구사항과 원료품질규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물색하였던 사실, ㉠은 그 무렵부터 김영빈을 비롯하여 소수의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중국의 원료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였던 사실, 원고의 직원들은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서는 일체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업규칙에 동의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 생산기술, 공정, 인사, 거래처, 원재료수급 등과 관련된 비밀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1 기재 원료공급업체 정보(이하 '별지1 공급업체정보'라고 한다)에는 초경합금 제품의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 분말의 적정한 규격, 평균입도, 카본 함량, 불순물 함량 등을 비롯한 원고의 품질요구사항과 원료품질규격을 충족한 업체 및 위 업체가 제공하는 원료의 규격, 수량, 단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공급업체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점, 위 공급업체정보는 초경합금 제조자가 중간유통상 없이 낮은 가격에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경영정보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 원고는 김영빈을 비롯한 소수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급업체정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급업체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별지2 원료관리표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 8, 15, 16, 27 내지 30, 33, 34, 43, 64, 8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76년 설립 이후 일본의 MIZUHOLOY 주식회사, 피고 ■이 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해 왔고, 2010년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사실, 원고는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면서 얻은 제품의 물성치와 초경합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첨가제의 함량, 배합■료, 밀링공정자료, 교반공정자료 등 초경합금 생산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06년경부터 원료관리표준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해 온 사실, 원고는 기술배합팀장인 김태상으로 하여금 원료관리표준을 대외비로 관리토록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김태상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 원료관리표준은 김태상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같은 기술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지 못하였고, 컴퓨터 자체의 로그인 패스워드 외에 파일 자체에도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료관리표준이 보관되어 있는 기술부서는 원고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서 기술부 직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되었고, 시건장치 외에 경비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2 원료관리표준은 원고의 재종표(원고가 생산하는 재종별로 WC(텅스텐카바이드)의 입도와 함량, Co(코발트)의 함량, 첨가제의 유무 및 함량과 그 비중, 경도를 비롯한 물성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를 기초로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기술정보인 신생공업 평균물성치표, 신생공업 재종배합조성표, 재종별회수분첨가표, 신생 재종밀링공정표(측량된 원료를 혼합하는 밀링공정의 원료투입량, 알코올 투입량, 밀링

시간 등을 비롯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생재종교반공정표(밀링이 완료된 슬러리 상태의 원료를 건조한 후 과라핀을 코팅하는 교반공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재종별회수분말처리표준(재종별로 사용되는 회수분말을 관리하는 표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재종별배합설계표준(신생공업 재종배합조성표와 재종별회수분첨가표를 함께 표시한 정보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동종 업계에서는 원료관리표준에 나와 있는 WC(텅스텐카바이드)의 입도, 사용된 첨가제 등이 표시된 홍보용 재종표를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별지2 원료관리표준은 홍보용 재종표와 달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용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보의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의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 원료관리표준은 일반인과 다른 직원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기술부서에서 김태상을 통하여서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의 비밀을 유지·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위 원료관리표준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별지3 소결자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4, 83, 85,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소결공정은 초경합금 제품의 재종 및 크기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소결온도와 승온속도 등을 조절하거나 온도 유지, 냉각 등의 변화를 주는 공정으로, 원고는 재종별로 소결패턴을 확립하기 위해 K05S, K10S 재종의 경우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SG7 재종의 경우 2007. 1.경부터 2009. 7.경까지, HD 재종

(SG7, SM7, SG6 등)의 경우 2007. 6.경부터 2007. 12.경까지 다양한 로(爐)에서 소결온도와 승온속도 등에 변화를 주면서 합금조직의 변화를 분석한 사실, 원고의 소결자료는 생산관리직장인 피고 ■의 컴퓨터에서만 저장되어 관리되었고, 위 컴퓨터에는 피고 ■과 소결팀장인 김용화만 아는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 ■은 원고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3 소결자료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구체적인 소결패턴과 수치가 담긴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시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의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며,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위 소결자료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라) 별지4 금형설계자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3, 45, 88,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의 금형설계자료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재종과 제품규격, 형상 등을 담은 영업정보와 소결공정에서 재종과 제품크기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부피수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에 맞는 금형의 수치와 형상 등이 기재되어 있

는 자료인 사실, 원고의 금형설계자료는 공정관리과장인 피고 ■의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관리되었고, 원고는 MES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별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한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 ■는 원고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4 금형설계자료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정보와 구체적인 금형 수치와 형상이 담긴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시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금형설계자료는 제품의 재종 및 크기에 따라 다른 소결공정의 부피변화를 고려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차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금형설계자료에 나와 있는 거래처에서 주문한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며,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위 금형설계자료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무

#####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가) 별지1 공급업체정보 침해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별지1 원료공급업체 중 하나인 중국의 해성으로부터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외상으로 입고하기 위하여 ㉡로 하여금 재종별 분말입고리스트와 피고 회사의 사업개요를 만들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피고 ㉠이 원료공급체인 중국의 해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이 별지1 공급업체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각호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별지2 원료관리표준, 별지3 소결자료, 별지4 금형설계자료 침해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자신이 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태상으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2 원료관리표준을 출력하여 자신의 책상에 올

려놓도록 하여 기망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김태상이 출력한 위 원료관리표준은 2011. 5. 30. PDF 파일로 저장되어 피고 ㉡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에 가담한 피고 ㉢의 USB에서 발견되었다), 피고 ㉡, ㉢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유지해야 하는 계약 내지 신의칙상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에 취업하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별지3 소결자료와 별지4 금형설계자료를 유출·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 ㉡,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별지 2, 3, 4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만들었고, 위 작성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 다. 피고 ㉡, ㉢, ㉣의 가담 여부

#### 1) 피고 ㉡,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 ㉢이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또한 갑 제59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회사의 사업개요, 정관, 자금·설비계획, 주주명부 등 피고 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와 피고 회사 설립 이후의 원고의 동향 및 원고가 제기한 가치분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피고 ㉢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정황이 보이고,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2 원료관리표준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얻게 된 원고의 내부자료 등을 자신의 USB에 보관하여 온 사정도 인정되므로,

피고 ㉑은 피고 ㉒, ㉓, ㉔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피고 회사 역시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데 대하여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㉑도 앞서 본 피고 ㉒과 마찬가지로 피고 ㉓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과 피고 ㉑이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 개입하였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 ㉕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㉒, ㉓, ㉔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내용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작성 자료를 만들거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개발한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피고 ㉑이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㉑이는 2011. 6.경부터 원고를 퇴사한 피고 ㉒, ㉓과 접촉하여 피고 회사를 위한 자금 투자방법을 계속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나 운영, 인력채용방법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원고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등 예상되는 피소가능성에 대한 대응방법을 협의한 점, ② 피고 ㉑이는 2011. 7. 말경 피고 ㉒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응방법에 대해 "㉕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기술과 밀접한 서적을 사무실에 비치할 것, ㉖ 위 자료를 복사 또는 스캔하여 생산부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낼 것, ㉗ 일본투자자와 기술제휴계약을 맺을 것(일본 기술자 파견, 생산과정의 노하우 등을 이메일 또는 팩스나 날짜가 찍힌 서류로 구비할 것, 피고 ㉑이의 생산매뉴얼 추천), ㉘ 학계 논문을 준비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과 같은 대응방법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㉑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투자에 앞서 실제로 위와 같은 대응방법

과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맺기도 한 점, ④ 피고 ㉑이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자금은 총 28억 원에 이르는데, 제품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신생업체에 거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㉑이와 피고 회사의 협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실사 결과 원고와의 소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단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 후 나중에 자본금으로 출자전환(DES)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한 지 2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피고 ㉑이에 대한 선급금 28억 원이 2014. 12. 31. 현재 그대로 남아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㉑이는 피고 회사가 피고 ㉒ 등이 원고로부터 유출한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초기 초경합금 재종을 생산할 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폐기, 사용금지, 공개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은 K계열의 초경합금 재종을 새로 개발하여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려면 배합공정과 소결공정, 금형공정을 포함하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영업비밀은 초경합금 개발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원고의 수년간의 초경합금 개발 이력에 기하여 만들어진 최적 조건 내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위 자료들을 이용할 경우 신생업체인 피고 회사의 재종 개발기간이나 제품생산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다른 경쟁업체도 원고의 재종에 대한 연구 분석과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비슷한 재종 개발은 물론 이 사건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영업비밀은 2001년 내지 2010년에 작성된 자료이고, 원고의 제품과 같은 K계열 초경합금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의 사용 및 공개 금지기간은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판결확정시로 보아 보호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보 저장 문서 등 폐기, 정보 사용금지, 정보 공

개금지, 제품 제조 등 금지, 설비 폐기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F, G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 회사도 피고 C, F, G가 침해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며, 피고 D, H, I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H에 (1) 주위적으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을 곱한 금액 합계 8,301,763,023원, (2) 제1예비적으로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 합계 7,780,775,758원, (3)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합계 3,725,095,484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원)
피고 회사의 연간 H [A] [원]	5,705,030,787	7,787,023,343	10,203,078,872	11,417,668,184	35,112,981,186
원고의 매출총이익률 [B1] [%]	20.23	25.89	25.55	22.11	
원고의 한계이익률 [B2] [%]	18.19	24.34	24.23	20.81	
원고의 영업이익률 [B3] [%]	8.57	15.51	12.45	6.63	



원고의 손해액	주위적 [A × B1][원]	1,154,321,540	2,015,816,265	2,607,026,964	2,524,588,273	<b>8,301,763,023</b>
	제1예비적 [A × B2][원]	1,037,789,576	1,895,244,981	2,472,023,408	2,375,717,792	<b>7,780,775,758</b>
	제2예비적 [A × B3][원]	489,176,092	1,207,998,017	1,270,503,062	757,418,314	<b>3,725,095,484</b>

나) 피고들(피고 C, D이 제외)의 주장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1) 피고의 R 중 아래와 같이 ① 원고의 판매 거부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한 업체에 대한 R(이하 '① 부분 R'이라 한다), ② 거래업체로부터 새로운 재종(K40)에 대한 주문을 받아 판매한 부분의 R(이하 '② 부분 R'이라 한다), ③ 원고가 아닌 다른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물량을 피고 회사에 주문한 부분의 R(이하 '③ 부분 R'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의 R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때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피고 회사의 이익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부분 R]

거래업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두리테크	655,221,460원	825,493,610원	1,105,550,570원	543,429,400원
건우초경 주식회사	650,328,764원	587,320,770원	640,655,050원	241,105,770원
대한몰드 주식회사	214,708,991원	324,612,800원	427,618,470원	236,865,500원
에스지테크놀	583,502,990원	162,147,330원	61,282,785원	100,905,740원
MICC Trading	189,822,250원	453,238,123원	218,893,340원	86,805,460원
주식회사 한일초경	152,000,000원			
합 계	2,445,584,455원	2,352,812,633원	2,454,000,215원	1,209,111,870원

[② 부분 R]

거래업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		33,803,600원	1,692,682,700원	1,492,355,800원

[③ 부분 R]

거래업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이엠테크	14,222,890원	31,808,410원	41,300,190원	16,003,800원
주식회사 한강세미콤			34,645,920원	26,414,680원
SST	177,200,127원	249,190,354원	88,974,210원	36,820,510원
신화테크	52,348,500원	69,975,930원	144,179,260원	77,945,480원
대림초경	32,303,728원			62,255,150원
하이테크유일	168,930,150원	84,456,490원	38,954,150원	
주식회사 하이테크유일		20,377,300원	61,520,680원	
우주초경	45,292,560원			
대덕프로파일 제2공장	22,861,710원	23,944,920원	6,407,060원	
진현초경	28,000,000원			
합 계	541,159,665원	479,753,404원	415,981,470원	219,439,620원

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참조).

**표 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제1항 전문	원칙	손해액 = 침해품의 양도수량 × 피침해자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제1항 후문	한도	피침해자의 생산능력 (피침해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수량 - 실제 판매한 물건 수량)
제1항 단서	공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부분 공제

###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가) 피고 회사의 R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2012년부터 영업비밀 보호기간 범위 내인 2015년까지 계속 매출을 올렸고, 피고 회사가 위 초경합금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연간 R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한 제품의 총판매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R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침해자의 양도수량' 총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1) ① 부분 R 공제 여부

갑 제19, 75호증, 을가 제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위 ① 부분 R의 거래업체들(피고 D 포함)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목적 내지 의도 하에 모두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R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② 부분 R 공제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80,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이하 '일진다이아몬드'라고 한다)가 2014. 1. 28.경 피고 회사에게 7,871,600원 상당의 초경디스크 제품을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품이 피고 회사가 생산한 K40 재종의 초경합금 제품으로 보이기에는 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위 K40 재종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령 피고 회사가 위 재종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한 2013년 R 33,803,600원, 2014년 R 1,692,682,700원, 2015년 R 1,492,355,800원이 모두 위 K40 재종에 대한 R이라거나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무관한 R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② 부분 R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③ 부분 R 공제 여부

이 법원의 제이엠테크, 신화테크, 대덕프로파일 제2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업체들에 대한 피고의 R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갑 제10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업체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회신서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사실조회회신과 무관하고 피고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 직원이 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을 요청받은 거래업체를 찾아가 사실확인서 초안을 제시하고 도장을 받는 등으로 위 사실조회에 참여한 정황이 있어 위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업체들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R 부분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③ 부분 R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 회사의 R은 아래와 같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R을 그대로 적용한다.

[피고 회사의 연간 R]

연간 R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고 회사	5,705,030,787원	7,787,203,343원	10,203,078,872원	11,417,668,184원

나) 원고의 이익액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의 피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피침해자의 R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이익액을 판매제품의 수량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 이익액은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침해자인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 R에서 공제되는 변동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변동비 외에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 변동비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아래와 같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원고의 한계이익률]

이익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계이익률	18.19%	24.34%	24.23%	20.81%

다) 손해배상액의 한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K계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업체로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R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연간 R 43,429,260,939원을 달성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피침해자인 원고의 생산능력에 따른 금액을 원고의 2011년 R 43,429,260,939원으로 보고, 위 R에서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의 R을 뺀 금액에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의 피침해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액 한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R 차액 [A]	7,485,137,419원 <sup>6)</sup>	8,098,529,438원 <sup>7)</sup>	12,436,248,464원 <sup>8)</sup>	14,745,439,300원 <sup>9)</sup>
원고의 한계이익률 [B]	18.19%	24.34%	24.23%	20.81%
손해배상액 한도 [A × B]	1,361,546,496원 <sup>10)</sup>	1,971,182,065원	3,013,303,002원	3,068,525,918원

라) 원고의 손해액

이에 따라 위 손해배상액 한도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의 손해액]

6)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2년도 R 35,944,123,520원  
 7)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3년도 R 35,330,731,501원  
 8)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4년도 R 30,993,012,475원  
 9)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5년도 R 28,683,821,639원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피고 회사의 연간 <b>A</b> [A]	5,705,030,787원	7,787,203,343원	10,203,078,872원	11,417,668,184원	
원고의 한계이익률 [B]	18.19%	24.34%	24.23%	20.81%	
<b>원고의 손해액</b> [A × B]	<b>1,037,745,100원</b>	<b>1,895,405,293원</b>	<b>2,472,206,010원</b>	<b>2,376,016,749원</b>	<b>7,781,373,152원</b>
손해배상액 한도	1,361,546,496원	1,971,182,065원	3,013,303,002원	3,068,525,918원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2013.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3.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7,199,434,393원 -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F**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3. 26.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 **㉡**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4. 3. 26.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

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피고 **㉡**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4. 19.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4. 18.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4. 4. 18.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이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7. 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이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4. 7. 1.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 ■

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3.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3. 28.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4. 3. 28.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 ㉡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  
 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  
 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6. 4.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  
 나,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4. 6.  
 4.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대하
	판사	김진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황성민

**별지**

**연도별 손익계산**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43,429,260,939	35,944,123,520	35,330,731,501	30,993,012,475	28,683,821,639		
매출원가	32,426,912,575	28,671,343,354	26,184,923,940	23,073,871,574	22,341,472,345		
매출총이익	11,002,348,364	7,272,780,166	9,145,807,561	7,919,140,901	6,342,349,294		
매출총이익률 [%]	25.33	20.23	25.89	25.55	22.11		
판매비와 관리비	3,434,840,355	4,190,762,467	3,665,091,096	4,059,843,356	4,439,539,415	상관계수 (2011~2015)	판단
급여 및 퇴직급여	1,292,844,588	1,361,319,694	1,343,803,354	1,323,670,921	1,434,967,629	-0.75	고정비
복리후생비	200,125,500	272,868,213	269,460,013	264,177,166	258,486,864	-0.74	고정비
여비교통비	116,938,164	205,715,634	176,660,154	143,499,647	163,132,596	-0.35	고정비
집대비	170,783,410	235,396,897	129,449,287	92,917,190	109,107,991	-0.57	변동비
통신비	35,443,282	56,815,681	58,806,879	49,141,995	38,474,400	-0.16	고정비
전력비				11,339,473	23,824,391	-1.00	고정비
수도광열비	16,975,240	23,986,352	22,838,450	24,171,450	27,978,430	-0.96	고정비
임차료				15,450,000	15,700,000	-1.00	고정비
세금과 공과	63,059,070	52,866,300	68,413,214	366,178,681	90,615,742	-0.45	고정비
감가상각비	192,616,347	213,204,049	229,968,329	248,797,220	298,787,343	-0.91	고정비
수선비	13,271,124	112,138,867	33,827,819	19,127,231	21,046,182	0.05	고정비
보험료	11,768,191	18,200,159	26,088,894	30,036,804	33,313,078	-0.96	고정비
차량유지비	122,015,641	83,564,442	90,179,021	100,953,384	121,305,017	0.08	고정비
교육훈련비				53,894,280	74,757,320	-1.00	고정비
경상연구개발비		30,636,500	8,156,000	4,258,600	13,692,100	0.46	변동비
운반비	344,934,397	319,847,199	310,555,507	273,352,165	244,804,068	0.96	변동비
드서인쇄비	44,675,300	18,679,727	21,741,345	4,534,570	4,662,900	0.98	변동비
사무용품비	89,662,712	120,559,096	75,511,596	33,504,130		0.55	변동비
스드폼비				40,384,452	52,603,375	-1.00	고정비
지급수수료	476,701,669	481,147,449	608,222,525	615,877,001	860,852,376	-0.81	고정비
대손상각비	177,122,917	506,033,490	120,453,250	279,362,407	164,053,406	0.00	고정비
건물관리비	10,366,140	15,166,290	16,463,190			-0.99	고정비
판매촉진비					327,971,559	0.00	고정비
무형고정자산상각	51,998,532	53,501,969	52,871,149	63,692,589	57,672,648	-0.72	고정비
멸상비		1,782,987			1,730,000	1.00	변동비
집비	3,538,131	7,361,472	1,621,120		1,522,000	0.27	변동비
총변동비	653,593,950	734,263,878	547,034,855	410,088,655	373,997,059		
매출총이익-총변동비	10,348,754,414	6,538,516,288	8,598,772,706	7,509,052,246	5,968,352,235		
관계이익률 [%]	23.83	18.19	24.34	24.23	20.81		
영업이익	7,567,508,009	3,082,017,699	5,480,716,465	3,859,297,545	1,902,809,879		
영업이익률 [%]	17.42	8.57	15.51	12.45	6.63		
증거	간제100호증의9	간제100호증의10	간제100호증의11	간제100호증의12	간제102호증		

[별지2]

· 원고의 2010. 12. 1.자 “신생공업 원료관리표준”상의 아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체의 정보.

파 일 명	세부 자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
101201-원료관리표준.xls	"신생공업 평균물성치"	자기포화도(4πσ), 항자력(Hc)값
	"신생공업 제종배합조성표"	재종별 조성("WC" 부분은 제외), 카본치 수치
	"재종별 회수분첨가표"	첨가 회수분의 구분투입, 원재료 투입량 ("WC" 및 "Co+ETC" 부분 제외)
	"신생재종 밀링공정표"	ATR/Ball의 밀링조건, 알코올 투입량, 밀링시간(밀링/순환밀링), 습식 체(SIEVE) 조건
	"신생공업 재종표"	바인더(Co)의 함량(wt%), 첨가제(E.T.C)의 종류 및 함량(wt%)
	"신생재종 교반공정표"	교반조건(1~4호), 교반작업시간(건조/교반), 파라핀 함량, 건식 체 조건
	"재종별 회수분말 처리표준"	바인더(Co)의 함량(wt%), 첨가제(E.T.C)의 종류 및 함량(wt%), 회수분말의 처리 시 구분표준(F/T/M/P/H/D/B/X)
	"재종별 배합설계표준"	바인더(Co)의 함량(wt%), 첨가제(E.T.C)의 종류 및 함량(wt%), 첨가 회수분의 구분(F/T/M/P/H/D/B/X), 원재료 투입량, 배합 카본치(하절기 T.C/동절기 T.C)

[별지1]

· 원고의 2011. 5. 1.자 "중국 텅스텐원료 구매현황표"상의 규격, 수량, 단가, 업체에 관한 정보

[별지3]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개별 소결패턴, 카본분석자료 및 수치 등 일체의 정보.

항목	파 일 명
1	한빛진공예소패턴-익스트류전.xls
2	한빛진공예소패턴-S8015.xls
3	한빛소형3,4호패턴-SM8,9.xls
4	한빛소형1,2호패턴-SM8,9.xls
5	한빛소형1,2호패턴-NM20.xls
6	한빛소형1,2호패턴.xls
7	한빛대형1,2호패턴-G2-SAW.xls
8	중형예비소결로 변경PTN2004.xls
9	재고의 재종별 예비소결조건.xls
10	예비소결실전달사항3 진공예소로PTN.xls
11	예비소결 표준PTN.xls
12	05년미립재질의 예비소결 조건.xls
13	05년 예비소결 표준 문서.xls
14	05,1,1재종별예비소결조건.xls
15	사용중인 PTN에 재질별 소결온도 구분.xls
16	미립재질의 소결개선 건.xls
17	HIGH Co재질의 온도별 수축.xls
18	2009년1월 각로의 주요 PATTEN.xls
19	2015.1.06.M8M9의퍼짐현상.xls
20	2004년각로의 주요PATTEN.xls
21	04재종별소결조건.xls
22	04년 소결 표준.xls
23	신터힙미립자소결PTN.xls
24	신터힙NF12소결PTN.xls
25	미립자소결진공냉각패턴-7.xls
26	미립자소결PTN-28.xls
27	광산용소결PTN.xls
28	광산소결PTN-33.xls
29	가압3호온도승온패턴SG7.xls
30	가압3호온도승온패턴NF12.xls

31	가압3호온도승온패턴K10s.xls
32	가압3호온도승온패턴K05s.xls
33	가압3호온도승온패턴GF20.xls
34	가압3호온도승온패턴G3,4(파살).xls
35	가압3호온도승온패턴G3,4(진공).xls
36	가압3호온도승온패턴G3,4(가압).xls
37	가압3호온도승온패턴(공소결).xls
38	가압2호온도승온패턴SNF-33.xls
39	가압2호온도승온패턴SG7.xls
40	가압2호온도승온패턴K10s-현재사용중11PTN.xls
41	가압2호온도승온패턴K10s.xls
42	가압2호온도승온패턴K10S - 시험용30PTN.xls
43	가압2호온도승온패턴K05s.xls
44	가압2호온도승온패턴(공소결).xls

[별지4]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개별 금형설계도 및 각 구체적인 설계수치, 거래업체명, 제품명, 규격, 형상, 거래처별 영업정보 등의 일체의 정보.

연번	품명(규격)(dwg 파일명)	업체	건수
1	DIE(30.2X16X6)	신일초경	1건
2	NOZZLE(12.8X2.8X5)	A-TECH HANDOK	12건중1건
3	(tamagawa 5ton)	신생공업㈜	49건중1건
4	RING CUTTER(218X80(110))-중립	신생공업㈜	81건중1건
5	(H104 11')-0.4	신생공업㈜	196건중1건
6	A002(4.5X10.5X19.5)	EDM TEC	12건중1건
7	로드카타(18.65X18)	Everpads	2건중1건
8	BORING BAR(SANALLOY)	Extrusion	86건중1건
9	C15	신생공업㈜	15건중1건
10	CUTTER(60X20.26X8)	G&G 산업	7건중1건
11	CUTTER(26.5X12X6.7)-주원금형	GTS 주원	5건중1건
12	DIE(21.5X13.4X2.5)	H.M TEC	5건중1건
13	BIT(20)	HANA TECH	1건
14	TAIL JAWS (12.6X10.2X4.9)	HANBIT	1건
15	CUTTER(20.5X7X3.3)-60'	HANDEVICE	9건중1건
16	B DNGA-150402-CHU-(6)	SG TECH	59건중1건
17	CCGW-09T302-(2)	SG TECH	1건
18	B DNGA-150402-CHU-(6)-1	SG TECH	1건
19	SNGN 120402-CHU-(13)	SG TECH	1건
20	B SNGW 120402-CHU-(15)-1	SG TECH	1건
21	SPGN 120302-CHU-(18)	SG TECH	1건
22	TCGW 16T302-(53)	SG TECH	1건
23	TNGN 160402-CHU-(55)	SG TECH	1건
24	VBGW 160402-CHU-(35)	SG TECH	1건
25	DCGW-11T302-CHU-(5)	SG TECH	48건중1건
26	에이치아이	에이치아이	1건
27	INSERT(3.18X9.5X9.5)	영승정밀공구	1건
28	SAW TIP(1.8XWX6.0)	J.M METAL	11건중1건

29	SNOW SPIKE TIP(3.15X8.0)	K&H	1건
30	CA BIT(10X18X39)	K1 TEC	1건
31	로드카타(18.45X16.8)	K.M TEC	2건중1건
32	saw tip(32X8XT)	K.W TEC	6건중1건
33	JAW TIP(13X14X16)	KENNAMETAL	외1건
34	KNIFE(0.5X23X170)	KQ	7건중1건
35	CR BIT(9.5X14X20)	K-TOOL	6건중1건
36	100-120금형(washer)	신생공업㈜	4건중1건
37	BC BIT(30X50X60)	PENTA무역	17건중1건
38	80TON(CORE)	신생공업㈜	30건중1건
39	사각BIT(13X15X48.8)	PM TEC	4건중1건
40	각형 TIP(2X10X100)	POSCO	1건
41	OIL HOLL PUNCH	신생공업㈜	7건중1건
42	BIT(15.8X12.2X31)-G2	SANALLOY	1건
43	BIT(15.8X25X25.1)-G2	SANALLOY	1건
44	BIT(16.5X12.2X31)-G2	SANALLOY	1건
45	BIT(16.5X25X28.8)-G2	SANALLOY	1건
46	BIT(8X12X15)	SANALLOY	1건
47	BIT(8X12X20)	SANALLOY	1건
48	BIT(8X8X16.5)-1	SANALLOY	494건중1건
49	KNIFE(0.8X5.3X16.74)	SANALLOY	64건중1건
50	SSLS46-(3.18X11.6X11.6)	대원소재	5건중1건
51	FOR KNUX1604L(4.76X9.3(3.4)X14.7)-CSK1604L	상경산업	15건중1건
52	SSFK33(4.8X9.3X14.7)-R(SK33C)	아시아야금	15건중1건
53	SSSS42S(3018X11.5X11.5)-SS42S	에이치아이	외1건
54	SSLS94(5.1X24.4X24.4)	한국교세라정공	3건중1건
55	각형 TIP(5.6X12.7X12.7)	ST코리아	1건
56	파쇄기 BIT(25X55X55)	SUN MOVE	1건
57	각형 TIP(6.0X16X25)	Taegu Tec	3건중1건
58	CUTTER(4X7X35)	TM TEC	1건
59	CUTTER(5X6X50)	TM TEC	10건중1건
60	disk(28.6)	TMC	14건중1건
61	WASHER(15)-1.25-1	신생공업㈜	281건중1건
62	K-TIP(4.6X7X14)	YWE(SDN BHD)	1건
63	DIE(1.395X12X8)	가야정공	1건
64	INSERT(4.76X12X32)-0748-075	가야정밀	5건중1건
65	BUSH(7X3X6.5)	건우초경	49건중1건

66	w104(13')	경남초경	6건중1건
67	BIT(5.9X14.5X15)-2	경동정밀	20건중1건
68	TBSS-140X100X64-GB1	경동정밀	8건중1건
69	SAW CUTTER(63X25.4XT)-자동	경우공구	1건
70	바이트 TIP(3.6X8.6X16.6)	경우정밀	1건
71	RING(12.9X10.2X1.85)	경원정밀	1건
72	DIES(10X3X7)	경일 DIES	5건중1건
73	로드카타(15.5X16)	고도TE	1건
74	보링 TIP(8X8X11)	고속정밀	3건중1건
75	보링 TIP(5X10X15)	광명공업사	6건중1건
76	BORING TIP(7.85X7.6X12.2)	광일테크	4건중1건
77	BUSH(6.5X3X6)	광진초경	13건중1건
78	(114 Conical)-new	구연통상	49건중1건
79	BUTTON BIT(10.3X18)	국제다이아몬드	11건중1건
80	BUTTON BIT(18.1X25)	국제기계	7건중1건
81	BC CANTER(15.5X26X22.7)	금강초경	
82	RING(10X4X0.6)	금산기술	12건중1건
83	BIT(9.5X13)	금아산기	1건
84	W103(10.5')-신규1	금우정밀	16건중1건
85	10TON PLATE	신생공업(주)	142건중1건
86	PLUNGER TIP 표준도면	신생공업(주)	27건중1건
87	CUTTER(2.5X10X23.4)	M	8건중1건
88	PUNCH(5X8X25)	남도테크	1건
89	CONICAL bit(9X17)	남양교역	2건중1건
90	W105(16')-연성용	남진정밀	1건
91	H.D 놀림대제작	신생공업(주)	45건중1건
92	KNIFE(10X22X50)-자동	다리텍	2건중1건
93	13X3X12.5	다영	1건
94	BUTTON BIT(16.2X22)	다이아몬드	14건중1건
95	CONICAL BIT(8X15)	달성	7건중1건
96	Auger BIT(36X35X39)	대건C&S	66건중1건
97	BIT(8X20)	대광공업	2건중1건
98	사각(5X7X13)	대광정밀	4건중1건
99	사각(5.5X33X55)	대덕프로파일	1건
100	LEAD CUT PUNCH(2.5X5.1X41.85)	대동ENG	3건중1건
101	대동정밀 가오리 TIP(CENTER)	대동정밀	15건중1건
102	BUSH(18X14X16)	대동정밀세라믹	5건중1건

103	HD(10X8)	대련정인상무	1건
104	렌츠볼트(12.9X20)	대림초경	1건
105	이형 TIP(3.0X10X30)	대명무역	2건중1건
106	SPIKE TIP(1.8X5.6)	대성공업사	2건중1건
107	도장DIES(A형)	대성정밀	22건중1건
108	RING DIE(64.5X52.7X10)	대성정밀공업사	22건중1건
109	GUIDE(5.8X2.4X11)	대성초경	4건중1건
110	DIE(4X17)	대성하이텍	7건중1건
111	평날 TIP(18X25.4X44.5)		1건
112	압출DIES	대신제일	3건중1건
113	SAW TIP(2.5X4.3X8.0)-Q	대양초경(광주)	3건중1건
114	NOZZLE(8X2.8X3)	대양초경(광주)	5건중1건
115	ROLL(122.5X82X15)	대영정밀공업사	1건
116	PUNCH(13.5X0.9X6.5)	대우초경산업사	4건중1건
117	KNIFE(2.2X6.0X10.5)	대원소재	2건중1건
118	RING(320X230X10)	대원인물	1건
119	CONICAL BIT(7.7(7.8)X11.4)	대일무역	3건중1건
120	DIE(8X4.6X4)	대진정밀	4건중1건
121	FS DIES(19.9X24.6)	대한정밀	1건
122	RING(12.3X10X8.7)	대한초경	3건중1건
123	석공 TIP(1.4X5.8X6.9)	대한테크	73건중1건
124	고로 개공용 BIT(8X17X21(24))	대현메카트로닉스	3건중1건
125	GUIDE(14X4X5)	대현정밀	7건중1건
126	NOZZLE(16X6.15X5.1)	덕산정밀	7건중1건
127	BUTTON TIP(7.9X12.5)	데스코	2건중1건
128	BORING TIP(6.8X7.8X12.45)	동류산업	8건중1건
129	CENTER(6X12)	동산정밀	1건
130	DIE(7X3.1X8)	동산정밀	3건중1건
131	CUTTER(5X6X45)	동양공구	3건중1건
132	BIT(12X62X75.05)-자동	동양중공업	300건중1건
133	new block	동영정밀	67건중1건
134	각형 TIP(5X8X11)	동영틀	1건
135	NOZZLE(20X14X6.4)	동해초경	9건중1건
136	RING(3X4.5X3.1)	두리테크	14건중1건
137	BALLISTIC(7X10.6)	디마인드테크	9건중1건
138	SAW CUTTER(119X40X0.5)	메가톤 초경	57건중1건
139	CUTTER(28X12X3)	명성정밀	5건중1건

140	GUIDE(50X28X11)	미래공구	6건중1건
141	NOZZLE(20X5.2X8)	반도도장기기	14건중1건
142	CUTTER(26X10XT)	발원테크	13건중1건
143	KNIFE(1.2X12X55)	베사	1건
144	DIE(11.5X5.5)	부강테크	1건
145	RCD BIT(18X27)-개발	부마 ENG	12건중1건
146	W104(11')	부산다이스	4건중1건
147	판재(106X126)-수정	신생공업㈜	32건중1건
148	BIT	사장님	24건중1건
149	SAW TIP(3.5XWX10.7)	산성기계	2건중1건
150	BORING TIP(7.8X7.8X11)	삼광공업	4건중1건
151	DIE(6X13)	삼성정밀	1건
152	사각 TIP(4.1X19X20.1)	삼운상사	2건중1건
153	CONICAL(13.4X25.7)	삼화기업	7건중1건
154	석공 TIP(3.5X3.5X30)-피라미드	삼환공구	21건
155	DIE-12X0.5X11(9)	서울 신소재	1건
156	CUTTER(6X3X0.15)	서진정밀	3건중1건
157	DIE(20XDX19.7)	서진초경	1건
158	DIE(12X1.91X9)	성신금형	1건
159	석공 TIP(9.7X15X46)	W계	4건중1건
160	이형DIES(W110)-R	성창정밀	29건중1건
161	DIE(18.5X7.7)	성화초경	1건
162	W107(18')	세종초경	10건중1건
163	NOZZLE(7.4X1.5X3)	세진초공	12건중1건
164	W106(11')	순천DIES	1건
165	H104(12')-신규1	신생공업㈜	1건
166	H104(12')-신규2	신생공업㈜	1건
167	H104(12')-신규3	신생공업㈜	1건
168	H105(12')-신규1	신생공업㈜	1건
169	H105(12')-신규2	신생공업㈜	1건
170	H105(12')-신규3	신생공업㈜	1건
171	H105(12')-신규4	신생공업㈜	1건
172	W104(9')-신규1	신생공업㈜	1건
173	W104(9')-신규2	신생공업㈜	1건
174	W104(9')-신규3	신생공업㈜	1건
175	W104(11')-신규1	신생공업㈜	1건
176	W104(11')-신규2	신생공업㈜	1건

177	W104(11')-신규3	신생공업㈜	1건
178	W104(11')-신규4	신생공업㈜	1건
179	W104(13')-신규1	신생공업㈜	1건
180	W104(16')-신규1	신생공업㈜	1건
181	W104(16')-신규2	신생공업㈜	1건
182	W104(16')-신규3	신생공업㈜	1건
183	W105(11')-신규1	신생공업㈜	1건
184	W105(11')-신규2	신생공업㈜	1건
185	W105(11')-신규3	신생공업㈜	1건
186	W105(11')-신규4	신생공업㈜	1건
187	W105(13')-신규1	신생공업㈜	1건
188	W105(13')-신규2	신생공업㈜	1건
189	W105(16')-신규2	신생공업㈜	1건
190	W105(16')-신규3	신생공업㈜	1건
191	W105(16')-신규4	신생공업㈜	1건
192	W105(9')-신규1	신생공업㈜	1건
193	W105(9')-신규2	신생공업㈜	1건
194	W105(9')-신규3	신생공업㈜	1건
195	CUTTER(2.5X10X30.9)	신생공구	7건중1건
196	BALL(8)	신생산업	48건중1건
197	KFC(6X8X12.5)	신생산업	1건
198	KFC(6X8X17.5)	신생산업	1건
199	각형(1.5X12X50)	신생산업	9건중1건
200	석공 TIP(5.6X5.1X12.7)	신생산업기술	96건중1건
201	DIE(9.2X4.0X5.5) (12.5X18)	신생툴테크	12건중1건
202	NOZZLE(17.5X0.6X16)-1	신성산업	18건중1건
203	신아정밀	신아정밀	5건중1건
204	쇄기 BIT(20X29)	W밀	80건중1건
205	스노우 체인 pin(3.15X5.9)	신일초경	1건
206	GUIDE(3.2X12.6X12.6)	신한초경	2건중1건
207	CA BIT(8X12X33)	아시아야금	34건중1건
208	KNIFE(1X6.5X25)	아크로 ENG	6건중1건
209	피복DIES	알파신소재	5건중1건
210	DISK(54.7X4)-자동	에디코	8건중1건
211	JAW TIP(8X10X16.5)-41	에이치아이	10건중1건
212	H105(16')	영재정밀	4건중1건
213	BUSH(8.192X3.6X9.8)	영진정밀	2건중1건

214	석공 TIP(3X15X32)	영창단조공업	7건중1건
215	BALLISTIC(10X16.2)	영풍산업	92건중1건
216	BALLISTIC(7X11)	영풍아이알	39건중1건
217	CA BIT(6X10X21)	영풍코리아	29건중1건
218	보링 TIP(7X7X9)	오산정공	7건중1건
219	Auger bit(29X32.5X43)	우성금속	83건중1건
220	RING(12X8X1)	우주초경	1건
221	NOZZLE(15X0.6X4.4)	우주테크	8건중1건
222	TOUS BIT(8.5X13.4)	원강초경	21건중1건
223	CA BIT(6.15X10X20)	원석정공	3건중1건
224	BIT(4X8)	원진산업	4건중1건
225	보링 TIP(7X7X8)	유승공업사	3건중1건
226	NOZZLE(5X6.5X16)	유일테크	12건중1건
227	BIT(30X45.1)	인곡산업	3건중1건
228	DRILL TIP(2.7X10X11.9)	일신코리아	5건중1건
229	(19.6X1.2X29)	일진정밀사	4건중1건
230	BUSH(4X2.6X4)	재영초경공구	3건중1건
231	CENTER	공	1건
232	CUTTER(3.4X7X11)-자동	제로콤	3건중1건
233	LEVER 추(5.8X20X57)	진성 ENG	3건중1건
234	BIT(13X25X27)	진성건기	1건
235	지팡이TIP(4.5X9)	진성정밀	6건중1건
236	HD(30X2X33)	진영초경공업사	2건중1건
237	사각TIP(3X13X51)	공	9건중1건
238	유립형다이스	창성다이스	4건중1건
239	SPRAY NOZZLE(7.976X1.778X31.75)	창신기공	5건중1건
240	RING(350X230X10)	청우정밀	28건중1건
241	동현기공(BUSH)	신생공업(주)	36건중1건
242	ht(3.1X6.5X55)	케이엠티	2건중1건
243	지팡이TIP(4.5X11)	코리아 TSM	1건
244	FD DIES(20X0.5X24.7)	코아정공	9건중1건
245	NOZZLE(12X5)	태흥상사	1건
246	A002(4.5X10.5X19.5)	투원테크	12건중1건
247	WASHER(25.4X12.7XT)	툴앤소닉	3건중1건
248	KNIFE(0.8X20X40)	공	2건중1건
249	JAW TIP(12.5X12.7)	하승상사	2건중1건
250	DIES(18.8X2(1.6)X3)	한국초경	1건

251	(3.6X11.5X21)	한부 ENG	1건
252	CUTTER(5(8)X5X45)	한야	10건중1건
253	HT(大)	한영초경	4건중1건
254	BC(J,M)-자동	한일초경	38건중1건
255	보링 TIP(7X11)	한진 DTS	4건중1건
256	saw tip(15X5XT)	합성릉공업	5건중1건
257	석공 TIP(5X5X15)	혁신	9건중1건
258	보강 TIP(2X2.9X23)	현대나이프	2건중1건
259	DIES(8X4.8X5)	현대초경상사	1건
260	NOZZLE(19.8X14.2X6.4)	협신정밀	1건
261	W102(11.5')	홍덕정밀	2건중1건
262	H.D(12X2.8X16)	화성신소재	7건중1건
263	JAW TIP(6X2.5)-SSJ-H1	화성정밀	3건중1건
264	CENTER(8X25)	화신M.T	1건
265	파쇄TIP(6X8.5X13.5)	효성디엔피	1건
266	삼각 TIP(5X36.9X42.22)	한중툴링사	16건중1건

[별지5]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의 배합기술자료.

항목	문서명	비고
1	KJ재종표(개발당시).xlsx	
2	2011. 11. 1.자 KJ재종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부용을 그대로 사용함. 신생공업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3	2011. 11. 1.자 KJ배합 교반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교반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신생공업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4	2011. 11. 1.자 KJ배합 밀링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밀링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신생공업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5	2011. 11. 1.자 KJ재종표	신생공업 원료관리표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변경란에 KJ재종명이 표기되었으며 재종란에 신생공업 재종이 기록되어 있음.
6	2011. 11. 1.자 KJ배합 교반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교반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변경란에 KJ재종, 재종란에 신생공업의 재종이 기록되어 있음.
7	2011. 11. 1.자 KJ배합 밀링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밀링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변경란에 KJ재종, 재종란에 신생공업의 재종이 기록되어 있음.
8	2011. 11. 1.자 KJ 재종별 배합설계표준	
9	2011. 11. 1.자 KJ재종표	신생공업 원료관리표준의 평균물성치, 배합설계표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함. 재종명을 제외한 내용이 신생공업과 동일함.
10	2011. 12. 1.자 KJ재종표	
11	2011. 12. 13.자 KJ ALLOY 재종표	
12	2011. 12. 23.자 KJ ALLOY 재종표	
13	2011. 12. 26.자 KJ ALLOY 배합표준	
14	2012. 1. 3.자 KJ ALLOY 배합표준	
15	2012. 1. 26.자 물성치	
16	2012. 2. 10.자 KJ ALLOY 배합표준 및	

	평가 물성치	
17	2012. 1. 26.자 KJ ALLOY 배합표준	
18	2012. 2. 10.자 KJ ALLOY 배합표준	
19	2012. 4. 2.자 물성치	
20	2012. 4. 2.자 KJ ALLOY 배합표준	
21	2012. 4. 2.자 배합표준 및 평가 물성치	
22	2012. 6. 1.자 KJ ALLOY 배합표준	
23	2012. 6. 1.자 KJ ALLOY 배합표준 및 평가 물성치	
24	2013. 2. 7.자 재종표	
25	2013. 2. 7.자 평가물성치	

[별지6]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의 소결기술자료.

항목	파일명
1	가압Patten(KG7).xlsx
2	가압Patten(KG2 Bit 전용).xlsx
3	가압Patten(KG3,4,5).xlsx
4	예소표준패턴.xlsx
5	한빛진공Pattn(KM8,9).xlsx
6	재종별 소결조건

[별지7]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의 금형설계기술자료.

항목	품명(규격)(dwg 파일명)
1	CUTTER(26.5X12X6.7)
2	BC CENTER(18.2X25.55X38)
3	KFC(6X8X17.5)
4	KFC(6X8X12.5)
5	KNIFE(1.5X12X50)
6	DIES(7X3X6.5)
7	CUTTER(5X6X50)
8	CUTTER(4X7X35)
9	BIT(8X8X16.5)
10	BIT(8X12X20)
11	BIT(8X12X15)
12	BIT(16.5X25X28.8)
13	BIT(16.5X12.2X31)
14	BIT(15.8X25X25.1)
15	BIT(15.8X12.2X31)
16	B CCGW-09T302-CHU
17	B DAGA-150402-CHU
18	B SNGN 120402-CHU
19	B SNGW 120402-CHU
20	BG SPGN 120302-CHU
21	B TCGW 16T302-CHU
22	B TNGN 160402-CHU-1
23	B VBGW 160402-CHU
24	BG DCGW-11T302-CHU
25	H104(12')-1
26	H104(12')-2
27	H104(12')-3
28	H105(12')-1
29	H105(12')-2



30	H105(12')-3
31	H105(12')-4
32	W104(9')-1
33	W104(9')-2
34	W104(9')-3
35	W104(11')-1
36	W104(11')-2
37	W104(11')-3
38	W104(11')-4
39	W104(13')-1
40	W104(16')-1
41	W104(16')-2
42	W104(16')-3
43	W105(11')-1
44	W105(11')-2
45	W105(11')-3
46	W105(11')-4
47	W105(13')-1
48	W105(13')-2
49	W105(16')-2
50	W105(16')-3
51	W105(16')-4
52	W105(9')-1
53	W105(9')-2
54	W105(9')-3

**[별지8]**

아래 재종명의 초경합금 제품.

항목	재종명
1	JSF 13
2	JF 12
3	JF 13
4	JF 15
5	JF 16
6	K 10
7	K 30
8	UF 10
9	UF 20
10	UF 30
11	KG 1
12	KG 2
13	KG 3
14	KG 4
15	KG 5
16	KG 6
17	KG 7
18	KM 7
19	KM 8
20	KM 9
21	JR 20
22	JR 40
23	JR 50
24	JR 60
25	JR 65
26	JM 40
27	JA 30
28	JA 50